**IT융합대학원 원우회 회칙**

**제1장**

제1조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연구에 정진하며, 전문인 으로써의 지역사회와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회는 아주대학교 IT융합대학원 학생회(이하“원우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소재지) 본 회는 아주대학교 IT융합대학원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   1.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

   2. 연구발표 및 학술경연

   3. 회원권익을 위한 대내외 학술활동

   4. 간행물 발행

   5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**제2장 회원**

제5조(구성 및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본 IT융합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.

제6조(권리와 의무)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.

   1. 회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

   2. 회원은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.

      (단, 회비 미납자는 회원자격 상실)

**제3장 임원**

제7조(구성)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   1. 회장 1인

   2. 사무총장 1인

   3. 위원 3인(재무, 기획, 학술)

 4. 감사 1인

 5. 고문 2인

제8조(임원의 자격 및 선임)

   1. 회장은 원우회 회원 중 1학기 이상 남은 회원 중에서 민주적 선거방식에 의하여 선출한다.

   2. 사무총장, 위원, 감사 및 고문은 회장이 임명한다.

 제9조(회장의 임기)

   1. 회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, 1회 연임 가능하다.

   2. 회장의 공석 시에는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보선으로서 충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임원의 직무)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   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각종 업무 및 회의를 관장한다.

   2. 사무총장는 회장을 보좌하고 각종회의, 행사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   3. 재무위원은 본 회의 재무 관리업무, 교학팀 관련 업무 및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, 원우회 조사발생시 근조기 발송 조치를 주관한다.

   4. 기획위원은 본 회의 업무기획, 외부기관 상호 교류, 원우회 자체행사, 신입생 환영회 및 정기총회를 관장한다.

 5. 학술위원은 본 회의 학술에 관한 연구를 조성하고 타 대학원과의 교류 및 글로벌 IT융합 세미나를 관장한다.

   6. 감사는 본 회의 회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다.

 7. 고문은 본 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,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.

제11조(고문) 본 회는 다음과 같이 고문을 둘 수 있다.

   1. 고문(전대회장) 또는 원우회 전 위원

**제4장 선거관리 위원회**

제12조(선거공고일) 원우회장은 차기 원우회장 선거일 전에 선거일시, 선거장소 및 후보자 등록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후보자 등록) 원우회장 후보자는 선거일 전에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.

제14조(구성)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우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우회장이 된다.

제15조(선거결과) 원우회장 선거 및 당선인 확정은 임기 종료이전에 완료 한다.

**제5장 총회**

제16조(총회)

   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   2. 정기총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일주일전에 공고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
      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      ② 원우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

제17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   1. 회칙의 개정

   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   3. 임원의 선임

   4. 사업계획의 수립

   5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18조(의결정족수)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  단,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**제6장 임원회**

제19조(구성) 원우회의 임원회는 회장, 사무총장, 위원(기획, 재무,학술), 감사 및 고문으로 구성한다.

제20조(자격) 임원은 1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회원을 원칙으로 하나, 회장이

필요하다고 판단 시 신입 회원 중에 선임할 수 있다.

제21조(임원회 운영) ~~임원은 1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회원으로 한다.~~

   1.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, 회장 유고시에는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   2. 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
   3. 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장 재정**

제22조(수입 재원)

   1. 본 회의 수입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원우회비   ② 특별회비   ③ 찬조회비   ④ 기타 재원

   2. 원우회비는 10만원을 기본회비로 하여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징수하며, 필요 시 임원회에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

   3. 특별회비는 별도로 정하여 원내 및 원회원으로 징수한다.

   4. 찬조회비는 회원 및 기타 모든 이로부터 희사 받을 수 있다.

제23조(재정관리) 본 회의 재정은 원우회에서 관리한다.

제24조(예산 및 집행) 예산은 학기 초까지 임원회에서 자체 사업비 및 제반 활동 경비에 대하여 사업별 항목별 심의 조정 후 IT융합대학원의 자문을 얻어 임원회의에서 편성 및 집행한다.

제25조(결산보고) 본 회의 결산 보고는 년 2회(학기말) 또는 원우회 임원회 변경 시 실시하여 회원에게 보고한다.

제26조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며, 학기별 임원회 변경시 개강 시점부터 입학식 및 졸업식 수행 월말까지로 한다.

제27조(경조비)

경조비 지급 기준내역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항 목** | **지원** | **비 고** |
| 결혼 | 회원 본인 | 화환 또는 경조금 | 10만원/인 상당 |
| 조의 | 회원 직계존속/비속 | 근조기 | 본인 부모/자녀배우자 부모 |

 단, 본인 결혼시 본인이 원할 경우 아주대학교 IT융합대학원 명의의 화환 또는 경조금중 선택 가능함.

**제8장 회칙개정**

제28조(개정) 회칙의 개정은 제16조 2항에 의하여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이를 행한다.

제29조(발의) 개정 발의는 임원단 회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여야 하며 개정안 결정여부는 제18조에 따른다.

**부칙**

1. 본 회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회칙은 2015년 3월 21일 개정하여 2015년 4월 X일부터 시행한다.